

2005 주요업무보고

2005. 3



교통지도과

순서

- 2005 주요업무 추진계획
-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

II . 2005 주요업무 추진계획

1

주·정차질서 확립

날로 심화되는 도시교통 정체를 원활히 하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주·정차 단속을 강화,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주차질서 확립 및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

□ 추진 방향

- 주·정차 위반차량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
- 불법 주·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최소화
- 준법정신 제고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

□ 추진 목표

- 불법주차 없는 거리조성
- 불법 주차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실시

□ 세부추진계획

- 불법주차 단속
 - 단속 근무조 편성 운영 : 16개조 53명
- 주·정차 위반차량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
- 집중단속지역과 단속완화지역 구분단속 ----- 민원최소화
 - 주요 간선도로 불법주차 일소 (집중단속지역)
 - 주요 간선도로 1일 2회 이상 순회 단속실시
 - 취약시간대(출, 퇴근시간) 집중 단속
 - 간선도로변 불법주차 차량 견인위주 단속
 - 노선별 단속 근무조 지정 지역책임제 실시

- 교통 혼잡도가 적은 이면도로 이하 주차질서 확립(단속완화지역)
 - 긴급차량 및 마을버스 노선 통행로 확보
 - 민원불편 신고사항 신속처리, 주민불편 해소
 -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불법주차 견인조치 지향
- 취약시간 불법 주·정차 단속 특별근무 실시
 - 근무 인원 : 2개반 5명
 - 근무 시간
 - ▶ 평 일 : 07:00 ~ 09:00, 18:00 ~ 22:00
 - ▶ 토요일 : 07:00 ~ 09:00, 13:00 ~ 17:00
 - ▶ 공휴일 : 10:00 ~ 17:00
 - ※ 매월 2,4주 토, 일요일 휴무
- 불법 주·정차 단속 공무원 직무 및 친절교육 강화 : 월 1회
 - 민원친절 교육 강화 -----대민활동자세 확립
 - 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 강화
- 민간 견인 대행업체 관리·감독 강화
 - 견인업체 종사자 교육 : 년 2회 이상 실시

2

불법 주·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

간선도로변의 불법 주·정차 차량을 일소하고 상습 지역에 대한 실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시 무인단속시스템 종합계획에 의거 상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함

필요성

-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
- 시민 교통문화 의식개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실시간 단속체계 구축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05년 ~ 200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
- 총사업비 : 3,121백만원 (구비)
- 설치지점 : 총 50개 지점(예정)
- 2004.2월 서울시 회의자료에 의거 설치대상 전수조사(184개소)

세부추진계획

- 년차별 추진계획

단위:백만원

| 계 | | 2005년도 | | 2006년도 | | 2007년도 | |
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설치대수 | 소요예산 | 설치대수 | 소요예산 | 설치대수 | 소요예산 | 설치대수 | 소요예산 |
| 50대 | 3,121 | 10대 | 813 | 20대 | 1,154 | 20대 | 1,154 |

- 2005년도설치계획

단위:백만원

| 구분 | | 계 | 1/4분기 | 2/4분기 | 3/4분기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무인단속카메라설치 | | 10대 | . | 3대 | 7대 | |
| 사업비 | 계 | 813 | 3 | 404 | 406 | |
| | 재료비 | 507 | . | 150 | 357 | |
| | 설치비 | 70 | . | 21 | 49 | |
| | 센터설치비 | 233 | . | 233 | | |
| | 부대시설 | 3 | 3 | | | |

○ 2005년도 설치 대상지역(예정)

- 영등포로 : 영등포시장 앞 (4대)
- 버드나룻길 : 파천교 ~ 민노총 사무실 사이 (2대)
- 선유로 : 문래동 철재상가 주변 (2대)
- 도림로 : 신길동 잡화상가 지역 (1대)
- 신길로 : 신길3동 사려가 쇼핑 앞 (1대)

※ 설치지점 결정전 해당 등 의원님과 사전협의(통보)로 장소변경 가능

○ 시스템 상황실 설치장소 확보

- 설치 장소 : 교통지도과 내
- 설치 시기 : 2005.4 ~6월

○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

- 시범 운영 : 2005.9.1 ~ 10.31
- 전면 시행 : 2005.11.1

□ 사업효과

- 도로의 차량소통 원활 및 교통문화 정착
- 불법 주·정차 상습지역 원격감시 및 24시간 단속실시 가능
- 무인단속으로 주·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

3

세외수입(과태료) 징수율 제고

주·정차위반과 버스전용차로운행 위반한자 등에 대해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적기에 부과·징수 하여 세외 수입 목표를 달성,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□ 징수대상 및 금액

(단위 : 천원)

| 회 계 명 | 징 수 대 상 | | 부과예정금액 (A) | 징수예정금액 (B) | 비율 (A:B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| | | 46,720,685 | 7,810,243 | 17 |
| 특별회계 | 주·정차위반 과태료 | 소 계 | 45,595,085 | 7,286,195 | 16 |
| | | 현 년 도 | 9,147,600 | 2,927,232 | 32 |
| | | 체 남 분 | 36,447,485 | 4,358,963 | 12 |
| 일반회계 | 소 계 | | 1,125,600 | 524,048 | 47 |
| |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| 현 년 도 | 1,062,000 | 499,140 | 47 |
| | 운수 및 운전자 과태료 | 현 년 도 | 41,800 | 3,762 | 9 |
| |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| 현 년 도 | 21,800 | 21,146 | 97 |

□ 추진방향

- 적기 정확한 과태료 고지서 송달로 징수율 제고
-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으로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
-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
- 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압류 및 대체압류
- 시효완성분에 대한 결손처분

□ 징수율 제고 대책

- 위반사항 적발 후 2개월 이내 고지서 발송
 - 단계별 고지부과
 - 위반사항 적발 → 과태료 고지서 발급(2개월)
 - 체납 독촉 고지 및 압류 통지(1개월)
 -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조치 : 월1회
- 과년도 체납차량에 대한 독촉 고지서 송달 : 년차별 분기1회 이상 송달
- 10건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후 압류
 - 재산조회 : 2~6월
 - 압류예고통지 : 7~10월
 - 압류촉탁등기 및 소유주에게 통보 : 11~12월
- 2회 이상 체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시 제외 : 년 2회 (반기1회)
 - 체납여부 조회 : 5월, 11월
 - 배정 제외 통보 및 과태료 체납 고지서 송부 : 6월, 12월
 - 시설 관리 공단 협조 시행
-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는 시효중단 없도록 대체차량 조회 후 압류
- 차량 및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자는 결손처분 : 수시

4

원활한 버스전용차로 단속계획

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도모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 13조의2제 1항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전용차로가 본래 기능대로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

추진방향

- 대중교통원활
- 자가용 이용억제

추진목표

- 엄정한 단속을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

버스전용차로 현황 (11.14km)

| 노 선 명 | 연 장 (km) | 단속지점 | 근 무 인 원 | |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| 계 | 공무원 | 공 익 | |
| 계 | 11.14 | 7 | 47 | 10 | 37 | |
| 경 인 로 | 1.23 | 1 | 13 | 2 | 11 | 전일제 |
| 시흥대로 | 0.87 | 1 | 8 | 2 | 6 | 전일제 |
| 대 방 로 | 1.27 | 1 | 8 | 2 | 6 | 전일제 |
| 용 호 로 | 1.42 | 1 | 5 | 1 | 4 | 시간제 |
| 노량전로 | 0.92 | 1 | 5 | 1 | 4 | 전일제 |
| 영등포로 | 3.48 | 1 | 8 | 2 | 6 | 시간제 |
| 양 평 로 | 1.95 | 1 | 0 | 0 | 0 | 전일제 |

□ 운영계획

- 단속노선 : 2004. 7. 1 시행한 서울시버스체계 개편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7개 노선(11.14km)중 1개 노선(양평로)은 지하철9호선공사로 단속 중지하고 6개 노선(9.19km) 단속실시
- 단속인력 : 단속원 47명 (공무원 10명, 공익근무요원 37명)
- 단속시간
 - 전일제운영(경인로,시흥대로,노량진로,대방로):07:00~ 21:00
 - 토요일 : 1, 3주는 15:00까지 단속
 - : 2, 4주는 전용차로 단속하지 않음
 - 일요일 : 전용차로제 미시행
 - 시간제 운영(용호로, 영등포로) : 오전 07:00 ~ 10:00
 - : 오후 17:00 ~ 21:00

□ 단속방법

- 1일 2개조 교대로 단속

5

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관리

자동차관리사업체(정비업·매매업·폐차업)를 지속적으로 지도·관리하여 업체의 불법행위 예방 및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 하고자 함

추진방향

- 자동차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 예방
- 업체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및 권익보호

추진목표

- 자동차관리사업체 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

사업내용

-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대상

| 계 | 종합정비업 | 소형정비업 | 부분정비업 | 원동기정비업 | 매매업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|
| 313 | 22 | 13 | 241 | 4 | 33 |

○ 주요점검 사항

- 관계법규 준수사항
- 등록기준 적합성 여부
- 이용자 불편사항

○ 점검결과 조치사항

- 자동차관리사업체 행정조치(등록취소, 고발,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, 영업정지 등)

6

효율적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개선 계획

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수 조사하여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인 관리로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

추진목표

-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시정조치로 이면도로의 차량 소통기능 확보
- 구민의 주차장 확보의식 함양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

추진방향

- 각종매체를 통하여 자진 시정토록 적극 홍보 실시
-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행위 근절
-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시정조치 및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벌칙 적용

점검에 따른 사전 집중홍보 실시

- 대상 : 3,765개소
- 기간 : 상반기 2005. 3. 1 ~ 3. 30 (1997~2004년 준공분)
하반기 2005. 9. 1 ~ 9. 31 (1993~1996년 준공분)
- 방법 : 구소식지, 영등포 홈페이지, 지역신문, 안내문 배부, 한강 케이블TV 방영

세부추진계획

- 점검대상 : 3,765개소
- 점검기간 : 2005.1.1~12.31
- 점검반 편성운영 - 상, 하반기 각 1회
주차시설팀 공무원 및 행정서포터스 활용 5개조 편성(2인 1개조)

○ 점검내용

-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기능유지여부
-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여부
- 기계식 주차장치 사용,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정상 작동여부

□ 이행강제금제도 실시에 따른 처리계획

○ 이행강제금 신설(주차장법 개정 2003. 12. 31)

- 부설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(제19조의 제4 제1항)
(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: 주차계획 설치비용의 20%)
-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미유지(제19조의4제2항)
(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: 주차계획 설치비용의 10%)

Ⅲ.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| 연번 | 제목 | 감사지적사항 |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| 처리 부서 | 조치결과 | 비 고 |
|----|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| 위원회 운영 부적절 | 교통민원신고심의운영회의 위원은 전문적 식견과 경험 이 풍부한 시민을 위촉하여 야 하나 실제 관내 적능단 체원으로 위원들이 구성되 어 있어 당초 위원회 운영 조례 취지에 맞지 않음 | 심의위원 위촉시 운 영설치 및 조례에 맞 게 심의위원을 선정 하기 바람 | 교통지도과 | ○ 조치사항 - 위원 위촉기간 만료후 재위촉시 조정 | 조치완료 |

| 연번 | 제목 | 감사지적사항 |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| 처리 부서 | 조치결과 | 비 고 |
|----|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|---|------|
| 2 | 자동차정비업소단속철저 | 우리구 관내에는 총287개소의 자동차정비업소가 있으나 대부분의 정비업소는 영세정비업소로서 서울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에의거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나 인도 및 보도 등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행위가 극심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우려되며 관련부서의 단속 또한 저조한 실정임 | 담당부서에서는 관내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안전하게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기타 비산먼지발생, 폐오일방치 등환경파괴행위등도 철저하게 단속바람. | 교통지도과 환경과 | ○ 조치사항 : (조치완료) - 불법정비 단속강화 및 추진실적 · 기간 : 2004.12.1- 12.31 · 실적 : 고발조치 3개업소, 행정지도 6개업소 - 향후계획 ·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정비에방 ·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 | 조치완료 |

| 연번 | 제목 | 감사지적사항 |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| 처리 부서 | 조치결과 | 비 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----|
| 3 |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시정통보 | ○ 당산동6가 341-2 지하1층 주차장 전체를 강의실과 창고로 사용 | 조속한 시일내 원상복구 조치 | 교통지도과 | ○ 조치사항(조치중) - 2005.02.28까지 원상회복 자진 시정통보 (교지-1432) | 조치중 |
| | | ○ 양평동4가 72 1층 옥내주차장을 점포로 사용 지하주차장을 작업장으로 사용 | 조속한 시일내 원상복구 조치 | | ○ 조치사항(조치중) - 2005.02.28까지 원상회복 자진 시정통보 (교지-1433) | 조치중 |
| | | ○ 양평동1가 131-1, 3 기계식주차기 5대 사용불능 | 조속한 시일내 원상복구 조치 | | ○ 조치사항(조치중) - 2005.02.28까지 원상회복 자진 시정통보 (교지-1434) | 조치중 |
| | | ○ 당산동6가 341-4 건물 옆 주차라인(2대) 없음 | 조속한 시일내 원상복구 조치 | | 주차장 적법유지 | 조치완료 |
| | | ○ 양평동2가 27-1 1층 옥내주차장을 점포로 사용 지하주차장을 작업장으로 사용 | 조속한 시일내 원상복구 조치 | | 주차장 적법유지 | 조치완료 |